



ISSUE BRIEFING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연구책임

조원지 연구위원

이슈브리핑 vol.279

연구진 정호중 전문연구원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의 필요성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유형 및 과제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CONTENTS

1.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의 필요성
2.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3.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유형 및 과제
4.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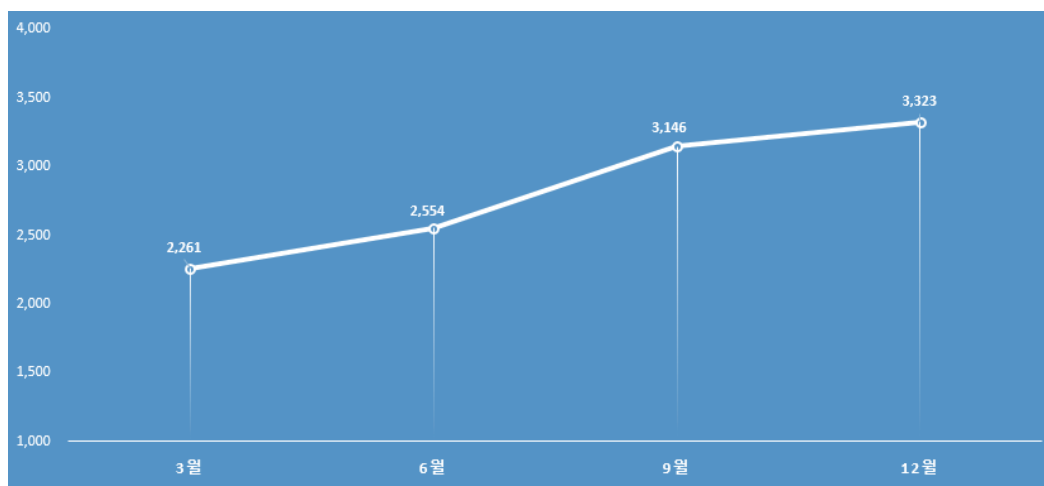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1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의 필요성

- 전북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따른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년과 2021년 입국이 중지되었던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E-8, E-9)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2022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규모는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22년 3월 31일 기준 2,261명이었던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12월 31일 기준 3,323명으로 증가¹⁾

〈그림 1〉 전라북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체류인구



-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전라북도 농가와 농가인구는 2018년 기준 각각 94,935가구, 208,600명에서 2021년 90,862가구, 188,689명으로 감소²⁾
 - 전북 농업 분야의 고용노동 투입량을 살펴보면, 일손돕기를 포함한 고용노동은 2018년 198.8시간에서 2021년 156.2시간으로 감소³⁾

1) 법무부. (2022).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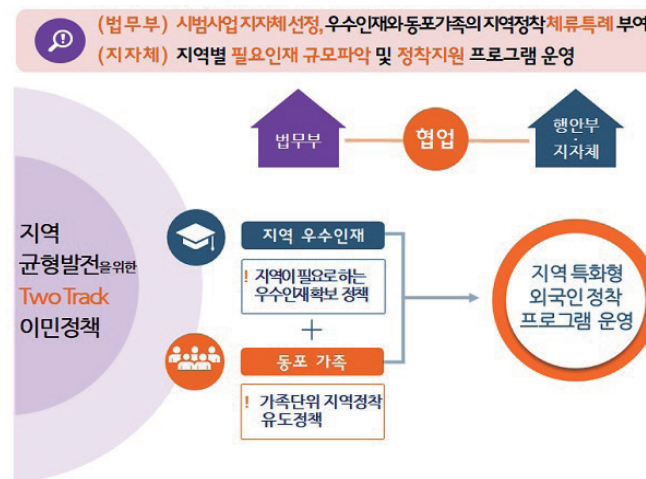
2) 통계청. (2018, 2021). 농림어업조사.

3) 통계청. (2018, 2021). 농가경제조사.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 지역의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 생활인구 및 경제인구 확보를 위해 2022년 ‘지역특화형 비자’가 신설됨
-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 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취업을 하였을 때, 이들에게 거주(F-2) 또는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하고, 이들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비자가 취소’됨

〈그림 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 외국인 우수인재와 동포가족에게 지역정착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전북 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해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북 농촌지역의 과소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거주(F-2)’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자격요건 중 하나는 ‘4년 이상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취업하는 사람’임
- 거주(F-2)사증 발급이 가능한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는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에 한하고 있어, 농업 분야의 비전문인력은 거주(F-2)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상장법인 종사자 : 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같음)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는 전북 농촌의 생활인구 및 농업부문 경제인구 유치를 위한 정책이 요구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활용하여 농업 분야 외국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생활인구 감소 및 농업인력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⁴⁾

- ‘지역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유도’를 위해 법무부는 2022년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함
-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도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또는 (소득)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충족
 - (거주지) 신청 시범지역 실거주(신청일) + 5년 이상 거주 약속
 - (취업) 거주지와 근무처가 동일 지역 + 5년 이상 동일 업종에 취업 약속
 - (기초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TPPIK) 3급 이상 취득
 -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위반 사례가 없을 것
- 2022년 전북의 시범지역으로 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이 선정되었으며, 지역우수인재 400명을 선발함
- 지역별로 지역우수인재가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시군별 지역우수인재 취업 허용 업종

시군	취업 허용 업종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식료품 제조업(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출판업(5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남원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김제시	농업(01), 연구개발업(70)

4)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고자료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가구제조업(32)
-------------------	--

- 이들을 위한 정착지원사업으로 1) 미취업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매칭해주고(외국인 유학생-도내 기업), 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안내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며, 3) 한국어 향상과 직무역량 강화(기계 운용, 컴퓨터 프로그래밍)를 위한 교육을 지원함

3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유형 및 과제⁵⁾

- 현재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인 '계절근로(E-8), 비전문인력(E-9), 특정활동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계절근로(E-8)

- 계절근로자제(E-8)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임
- 단기 취업 계절근로(C-4)의 경우는 최대 90일 고용 가능함
- 계절성으로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분야의 인력공급을 위해 국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또는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4촌)은 계절근로자(E-8)로 5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음
-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농가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인원은 2명에서 7명까지 가능함

〈표 2〉 농업분야 허용 곡물

허용 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갯임, 오이, 쪽파, 호박(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숙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대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뽕, 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신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콜라비, 양배추, 녹색 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2) 비전문인력(E-9)

- 고용허가제(E-9)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근로자가 최장 4년 10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 비전문인력(E-9)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응시하여 200점 만점 기준으로 총득점 80점 이상 취득해야 함
- 비전문인력(E-9)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농업 분야는 작물재배업과 작물재배 서비스업이 해당됨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신청하며, 7일간(농업)의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표 3〉 고용허가제(E-9) 허용업종

허용업종	체류자격	적용범위	세부작업 분류
제조업	E-9-1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제조업 부리산업
건설업	E-9-2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제외	건설업
농축산업	E-9-3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농업 축산업 농·축산서비스업
어업	E-9-4	- 연안어업·근해어업 - 양식어업 - 소금채취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서비스업	E-9-5	- 건설폐기물 처리업 - 냉장·냉동 창고업(내륙에 위치한 업체)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출판업	건설폐기업 냉장·냉동업 재료수집업 출판업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 아래 제시된 요건을 갖춘 성실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 전 고용주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취업활동기간(5년 미만 또는 직권 연장 시 6년 미만)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최초 근무한 업종과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변경하여 4년 10개월 근무한 경우
 - 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로, 고용주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재입국 특례 적용을 인정한 경우
 -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또는 100인 미만의 제조업에 근무할 것
 -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숙련기능인력(E-7)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임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숙련기능인력(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농림어업 숙련기능인(E-7-4) 비자는 점수제를 적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직종 중 하나로, '작물 생산, 축산, 영림, 벌목 등 임업 등과 관련된 사업체의 생산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할 수 있는' 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음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와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에 있는 외국인
-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취득을 위해 1) 기본항목 → 산업기여가치 → '연간소득' 항목 10점 이상으로, 총 52점 이상, 2) 기본항목 → 미래기여가치 해당 항목 점수 35점 이상, 총 72점 이상,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산업기여가치 : 기본항목(연간소득)
 - 미래기여가치 : 기본항목(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 선택사항 : 근무기간, 보유 자산,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 분야 근무경험, 관련 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 경험 등
-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은 동일 업체에 계속 취업 시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근무처 변경·추가 시에도 사전허가가 필요함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는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비전문인력인 계절근로자(E-8)와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또는 농업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타 산업 분야와 달리, 비숙련인력(E-9)이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 전환신청이 어려움
-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를 위한 거주(F-2) 비자는 '상장법인과 유망산업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점수제 우수인재에게 발급되기 때문에 농업부문 숙련기능인력(E-7)은 거주(F-2) 비자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전북 농촌지역의 생활인구 및 경제인구로 외국인근로자 유치를 위해 이들이 지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 체계의 변화가 필요함

4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⁶⁾

1)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개념

-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전북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문제 해결과 농업산업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인력과 농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숙련기능인력인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간 농촌지역에 체류하며 농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함
-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프로그램은 농촌지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또는 전북에 소재한 농업 관련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농촌지역에 5년간 거주하고 농업 분야에 종사할 것을 약속할 경우, 이들의 체류자격을 거주(F-2) 비자로 전환해주는 사업임
-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소지자는 가족을 계절근로자(E-8)로 초청할 수 있음
-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청요건⁷⁾으로, 신청자는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5년 이상 거주를 확약하고, 2) 근무지는 거주지와 동일한 지역이어야 하며, 5년 이상 동일 업종에 취업해야 함
- 또한, 3)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였거나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고, 4)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어야 함

6)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고자료' 참조

7) '지역특화형 비자'의 신청요건을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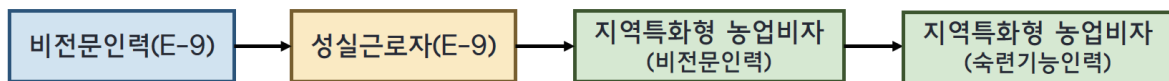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2)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취득과정

(1) 지역특화형 비전문인력 농업비자

- 지역특화형 비전문인력 농업비자는 비전문인력(E-9) 비자로 취업활동을 하는 성실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최소 2년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비전문인력(E-9) 성실근로자는 '지역특화형 비전문인력 농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음
 - 성실근로자는 재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 상한기간은 3년임
- 최초 허가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체류 실태를 점검하고,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함
-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로 취득한 외국인근로자는 최소 5년 이상 농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업비자로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경영체 관리자로서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함

〈그림 3〉 지역특화형 비전문인력 농업비자(고용허가제, E-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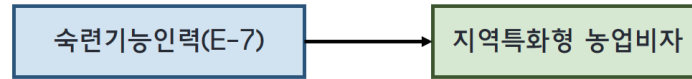
- 해당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자녀 보육 및 학습지원, 아동 먹거리돌봄,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 지역주민과의 관계 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 '지역특화형 비전문인력 농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은 계절근로자(E-8)로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2)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업비자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업비자는 숙련기능인력(E-7) 체류자격으로 전북 농촌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성실근로자 또는 전북에 소재한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예정)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 중 최소 5년 이상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근로자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유기농업 등 관련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했거나,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 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이상일 경우, 최소 4년 이상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또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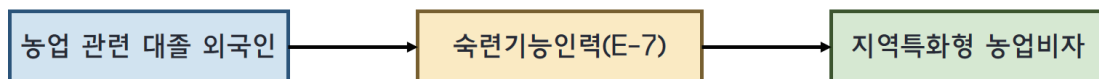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그림 4〉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업비자(숙련기능인력, E-7)



- 전북 소재한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 숙련기능인력(E-7) 비자를 취득하여 최소 5년간 작물생산 관련 사업체의 관리자로서 경제활동에 종사한 외국인근로자는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한 경우, 최소 3년간 작물생산 관련 사업체에 종사한 외국인근로자는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신청 가능함
- 기초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학과의 경우, 외국인 재학생의 농업부문 관리자 관련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이들을 위한 실습 또는 인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 미취업한 외국인 졸업생을 위한 시군 내 농업경영체와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함

〈그림 5〉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업비자(농업 관련 학과 졸업생)



- 해당 비자를 취득하고 첫 번째 해가 되는 시점에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점검을 받은 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함(1, 3, 5년)
- 해당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자녀 보육 및 학습지원, 아동 먹거리돌봄,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또한 계절근로자(E-8)로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3)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추진 기반 조성

(1) 지역특화형 비자 전담부서 설치

-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배치 및 전담부서 설치·운영이 필요함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 전담부서는 사업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 관리·감독, 정책사업 발굴·시행,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취득 외 국인근로자 DB 구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이와 함께, 지역특화형 비자와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통합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2)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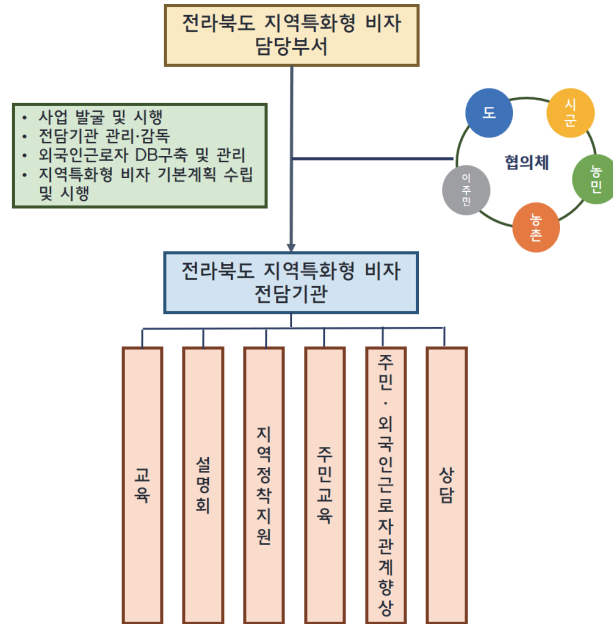
- 지역특화형 비자 전담기관은 지역우수인재 선발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와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통합하여 사업을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기관은 외국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뿐만 아니라 지역특화형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적응 및 정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함
-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취득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전북 농촌지역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한국어·한국사회 교육,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관리, 가족지원사업, 외국인 정착 멘토링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 농촌지역 생활인구 및 경제인구 확보를 위한 해당 사업이 전북 농촌사회에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공동체의 외국인 정주민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고정관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문화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지역주민-외국인근로자의 교류 및 상호작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며, 이는 전담기관의 역할에 해당됨
- 외국인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을 위한 상담창구 설치·운영이 필요함

(3)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협의체 운영

-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취득하여 전북 농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적응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외국인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이주민 관련 단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실무자 및 지역활동가, 외국인근로자 사용자인 농업인 대표, 외국인근로자의 일상이자 일터인 농촌지역의 지역단체장, 도·시군 실무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함
- 협의체는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추진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역주민, 지역의 삶의 질의 증진 방안을 모색함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그림 6〉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추진체계



〈표 4〉 지역특화형 비자와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구분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목적	전북 시군별 산업, 대학, 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 유도, 지역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전북 농촌지역의 농업인력난과 인구감소문제 해소를 위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유치로, 지역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농업농촌 발전 등 선순환구조 실현
대상	- 도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예정자)(D-2) 20~39세	- 비전문인력(E-9)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 - 숙련기능인력(E-7)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 또는 도내 농업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예정자)(D-2)
추진내용	- 도내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D-2) → 지역 거주(F-2) 비자 -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일자리 매칭, 한국어교육, 직무역량 강화교육)	- 지역특화형 비전문인력 농업비자(비전문인력(E-9)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 → 지역 거주(F-2) 비자)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업비자(숙련기능인력(E-7)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 또는 도내 농업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D-2) → 지역 거주(F-2) 비자) - 자녀보육·학습지원, 아동 먹거리돌봄, 사회통합, 지역 정착 등 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계절근로(E-8) 허용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기대효과	• (중소)도시지역 생활인구 및 경제인구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도모 및 경제 활성화 • 농업인력 확보에 따른 전북 농업인력난 완화 • 전북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해결 • 전북 농업·농촌 발전 및 지속가능성 강화 •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를 위한 개인 중심에서 가족 단위의 지원프로그램 제공 • 경제활동인구 유치를 통한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의 선순환구조 실현 • 인구증가에 따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조성에 의한 전북 농촌 정주여건 개선
------	--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2022).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통계청. (2018, 2021).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2018, 2021). 농림어업조사.

The Strategies for Introducing the Region-Specialized Agriculture Visa in Jeollabuk-do

Won-jee Cho, Research Fellow

Due to a decrease in the farming population and aging in Jeonbuk, South Korea, farms are increasingly in need of foreign agricultural workers to solve the shortage of labor. Despite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the shortage of labor in rural areas remains a challenge to overcome.

As the problem of declining local population becomes more serious, the region-specialized visa was introduced to encourage the settlement of foreign talents in the area and secure the local residential and economic population in 2022.

The region-specialized visa is mainly focused on addressing the population decline in Jeonbuk urban areas, so it has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the depopulation issue in rural areas.

We are going to discuss the utilization of the region-specialized visa to secure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is study suggested the Jeonbuk region-specialized agricultural visa that allows foreign workers who engage in farming activities in rural areas or foreign graduates for agricultural universities, located in Jeonbuk, to change their visa status to a residence visa after promising to reside in rural areas for 5 years. They can work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invite their family members as seasonal workers.

The region-specialized agriculture visa is categorized into 'the region-specialized agriculture visa for non-professional workers' and 'the region-specialized agriculture visa for skilled workers.'

The region-specialized agriculture visa for non-professional workers is designed for diligent e-9 visa holders who are employed in agricultural activities. The region-specialized agriculture for skilled agricultural workers is targeted to diligent e-7 visa holders who engage in skilled agricultural activities or foreign nationals who have graduated from agriculture-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ies located in Jeonbuk.

To ensure a stable and efficient implements of this visa, it is vital to establish a visa-specialized department, an visa-operating agency and operate a committee for the region-specialized agriculture visa.

Key words

region-specialized agriculture visa, non-professional employment(E-9) visa, Specific activities(E-7) visa, residence(F-2) visa

iSSUE
BRIEFING vol.279

The Strategies for Introducing the Region-Specialized Agriculture Visa in Jeollabuk-do

Won-jee Cho, Research Fellow



발행인_권혁남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